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갑과 을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위자료로 금 만 원을 지급한다.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만 원을 지급한다.

갑이 위 일시에 위 각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 년 월 일

서명

갑 :

을 :

## 법률사무소 해온이 알려드리는 작성 시 주의사항

-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 분할되는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싶은 경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

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갑과 을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가. 위자료: 원고와 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나. 재산분할

(1) 현금: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2013. 9. 24.에 1억 5천만 원, (나) 2014. 12. 31. 이전에 1억 2,500만 원,

(다) 2015. 12. 31. 이전에 1억 원, (라) 2016. 12. 31. 이전에 1억 원,

(마) 나머지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형제 등에게 건넨 돈으로 상계한다.

(2) 전세보증금 및 시설: 현재 원고가 운영하는 ‘강원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과 권리 및 시설 일체 도합 5억 원 상당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단, 원고는 2013. 12. 31.까지 위 시설을 처분할 수 있고, 위 기한까지 처분될 경우  
피고는 처분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원고에게 구비해 주고, 처분하고 받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기한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권자 명의변경을 하여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제세공과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은 전부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3) 유체동산: 현재 피고가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유체동산(생활 도구 등)은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이후 원고는 어떤 경우라도  
유체동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자동차: 현재 원고가 타고 있는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5) 보험: 현재 피고가 원고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보험(약 3개 정도)은  
전부 원고의 명의로 변경한다.

(6) 원고, 피고의 의무와 벌칙

가. 피고는 위 3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원고에게  
구비해주고,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공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해 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전허락 없이 피고와 자(子)가 생활하는 집을 방문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원고, 피고는 본 이혼 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다. 전 항의 모든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 합의는 무효로 한다.